

공 보

제677호 2018. 12. 26.(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470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4
거창군 조례 제2471호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거창군 조례 제2472호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거창군 조례 제2473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24
거창군 조례 제2474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거창군 조례 제2475호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36
거창군 조례 제2476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거창군 조례 제2477호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46
거창군 조례 제2478호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거창군 조례 제2479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58
거창군 조례 제2480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거창군 조례 제2481호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72
거창군 조례 제2482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78
거창군 조례 제2483호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5
거창군 조례 제2484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90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96
거창군 규칙 제1251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115
거창군 규칙 제1252호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119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26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122
거창군 훈령 제427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124
거창군 훈령 제428호 거창군 상품권 구매와 관리 규정	128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5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04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33
거창군 고시 제2018-156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1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3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1527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 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38
거창군 공고 제2018-1547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141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8-19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2

계 장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0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령화 및”을 “고령화,”로 “군”을 “거창군”으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를 “셋째 이후 태아·출생아 건강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둘째아이 이상”을 “둘째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 제목 “(지원내용 및 규모)”를 “(지원 내용과 규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둘째아이 이상 5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셋째

자녀부터”로 한다.

제7조제1호·제2호 중 “지급한다.”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가 지급 할 수 있다.”를 “추가지급 가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회 실시한다.”를 “두 번 집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회 전액 지급한다.”를 “한 번에 전액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를 “태아·출생아”로 “지급한다.”를 “분할지급”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신청 및 지원절차)”를 “(신청과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부등록”을 “임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참하여”를 “가지고”로 한다.

제11조 제목 “(지원대상 및 기준)”을 “(지원 대상과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둘째 이후 자녀 중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최초 영유아양육비 지급하는 달에 소급 분을 함께 지원한다. 다만 전입세대 일 때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1. 둘째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지급
2. 셋째 자녀부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 지급

제13조 제목 “(신청 및 지원절차)”를 “(신청과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은 출생 또는 전입 후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20조 제목 “(지원내용 및 업무관장)”을 “(지원내용과 업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8호 중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을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다만, 제8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경우에는 예외(인구교육과)
 - 가. 학기별 30만원 이내
 - 나. 재학 중 최대 4번

제22조 제목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를 “(환수조치와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본”을 “이”로 한다.

제23조 중 “본”을 “이”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로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6호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양육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2019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u>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지원” 등으로 구분·시행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u>군</u>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u>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사람</u>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2.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u>셋째 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u></p> <p>3. (생략)</p> <p>4.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u>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5.~9. (생략)</p> <p>10.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u>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u>를 말한다.</p> <p>11. (생략)</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1.~5. (생략)</p> <p>6. 출산장려금: <u>둘째 아이 이상 50만원</u> (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u>거창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삭 제></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u>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2.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u>셋째 이후 태아·출생아 건강을 위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4.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둘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u>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5.~9. (현행과 같음)</p> <p>10.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u>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u>을 말한다.</p> <p>11.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 내용과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1.~5. (현행과 같음)</p> <p>6. 출산장려금: <u>5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u></p>

로 지원한다)

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250만원 이내

제7조(지원방법) 제5조 각 호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 등록 시 지급한다.
2. 임산부 영양제는 최대 7개월분을 지급한다.
3. 엽산제의 경우 임산부는 개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임여성은 5개월분을 일괄지급하되 임신이 될 때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다.
4. 삭제 <2009.6.10>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6.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
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지급한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둘째아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7.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셋째 자녀부터 250만원 이내

제7조(지원방법) 제5조 각 호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 등록 시 지급
2. 임산부 영양제는 최대 7개월분을 지급
3. 엽산제의 경우 임산부는 개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임여성은 5개월분을 일괄지급하되 임신이 될 때까지 추가지급 가능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접종
6.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한 번에 전액 지급
7.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지급

제8조(신청과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대상과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 중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최초 영유아양육비 지급하는 달에 소급 분을 함께 지원한다. 다만 전입세대 일 때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셋째아이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구교육과)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번)

<신 설>

9.~11.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제22조(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군수는

달부터 지급한다.

1. 둘째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지급

2. 셋째 자녀부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 지급

제13조(신청과 지원절차) ①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 또는 전입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내용과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구교육과)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번)

9.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다만, 제8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 경우에는 예외(인구교육과)

가. 학기별 30만원 이내

나. 재학 중 최대 4번

10.~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제22조(환수조치와 기록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 한다.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 한다.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기 본 현 황								
신 청 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 <input type="checkbox"/> 전입장려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녀)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출산장려 지원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출생아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양육비 <input type="checkbox"/> 임신부철분제 <input type="checkbox"/> 엽산제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input type="checkbox"/> 임신축하기념품 <input type="checkbox"/> 세자녀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자녀성명		생년월일					
	자녀수	자녀 중	째	신청인과의 관계				
	학자금신청	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				
전입장려 지원	전입가족 현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대학생	학교명				학과명		
	<input type="checkbox"/> 전입정착금·기념품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input type="checkbox"/> 쓰레기종량제봉투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관람권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고등학생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대학생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전입대학생 학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비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국적취득자지원금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대학생 학자금과 생활관비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 고등학생학자금 납입영수증,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신청인 (인) </div> 거창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읍·면장 (인) </div>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안 제5조제6호)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안 제20조제1항제9호)

- 1) 학기별 30만원 이내
- 2) 재학 중 최대 4번
- 3)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출산장려금	75	75	75	75	75	375
	대학생 생활관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	375	375	375	375	375	1,875

○ 산출기초 : 2018년 인원 기준 추정

- 첫째아이 150명 × 50만원 = 75백만원
- 기숙사생 500명(50퍼센트) × 60만원 = 300백만원

3. 관련의견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손 용 모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01
----------	----------

제출일	2018. 11. 2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우리 군 인구증가대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전입장려를 위하여 생활관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6호)

둘째아이 이상 50만원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안 제20조제1항제9호)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4번,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75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해당부서와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5.~11. 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1호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소 또는 시설: 행사 주최나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나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

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남/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와 면적		
	사용기간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 . . ~ . . . </div>		
위치도 (사진, 정확한 위치 표시)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서류 제출)	<input type="checkbox"/>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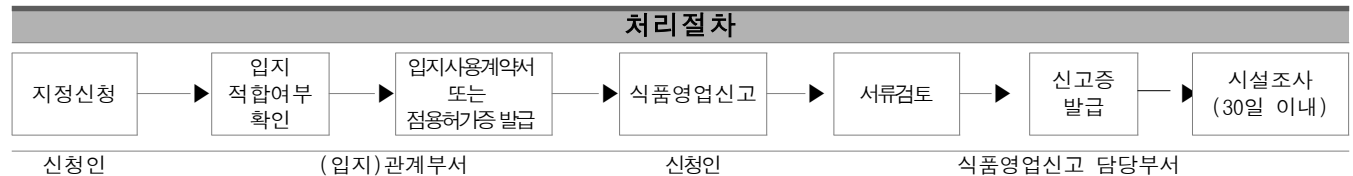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부서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02
----------	----------

제 출 일	2018.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청년창업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2조)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일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규정 신설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장소를 지정신청할 경우 신청서식 등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1. 1.~11. 2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2호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를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3조 제목 “(세입)”을 “(설치와 세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준용규정)”을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u></p> <p><u>제3조(세입)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u></p> <p>1.~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산업단지 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u></p> <p><u>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u></p> <p><u>제9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 <u>② 사업자가 조성부지 분양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u></p>	<p><u>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u></p> <p><u>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1.~6. (현행과 같음)</p> <p><u>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9조(관리·운영)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p><u><삭 제></u></p>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지출
- 관련조문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	국비	200	200	200	200	200	1,000
	도비	60	60	60	60	60	300
	군비	2,496	2,500	2,500	2,500	2,500	12,496
	소계	2,756	2,760	2,760	2,760	2,760	13,796
총 비용		2,756	2,760	2,760	2,760	2,760	13,796

3. 관련 의견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19년도 예산 2,756백만원 확보 예정

작성자 : 기업지원과장 임 영 수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03
----------	----------

제 출 일	2018.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나. 법령 재기재사항 등 정비함(현행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2,756백만원 확보 예정

국비 200백만원, 도비 60백만원, 군비 2,496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3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별지 서식]

영수필통지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거창군 복지정책과 </div>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납입통지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거창군 복지정책과 </div>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영 수 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거창군 복지정책과 </div>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의료급여기금 운영

나.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767	787	807	827	827	4,015
세출	군비	767	787	807	827	827	4,015

- 산출기초 : 진료비 군비부담금(전체진료비 4퍼센트), 부당이득금 반환금, 예금이자

3. 관련 의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 수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2019년도 군비 767백만원 소요
- 2019년 전체예산 1,006백만원 확보 예정
(국 191, 도 48, 군 767)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04
----------	----------

제 출 일	2018.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재기재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재기재한 사항 삭제 정비함
-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함(안 제5조)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의료급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 1,006백만원 확보 예정
국비 191백만원, 도비 48백만원, 군비 767백만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4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 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 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 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나.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6. (생략)</p> <p>7. “전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p> <p>8. “순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p> <p>9. “공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u>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u>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u></p> <p>2. <u>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u></p> <p>② <u>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u></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u>국가보훈대상자</u>로서 지급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 행	개 정 안
<p>1. <u>명예수당: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 명예수당</u></p> <p><u>가. 전몰군경의 유족, 참전유공자: 월 10만원</u></p> <p><u>나.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 월 3만원</u></p> <p>2. 사망위로금: 30만원</p>	<p><u>1. 명예수당</u></p> <p><u>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u></p> <p><u>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 명예수당</u></p> <p><u>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u></p> <p><u>나.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u></p> <p>2. 사망위로금: 30만원</p>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확대 지급과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 관련조문 : 제8조(복지지원),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군비	197.3	197.3	197.3	197.3	197.3	986.5

3. 관련 의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와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을
통한 예우강화로 타당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180백만원
- 종량제봉투 지원 : 17.3백만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65
----------	---------

발의일자	2018. 11. 27.
발 의 자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항목 삭제(안 제2조)
- 나.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
 -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사업
 -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
 - 3)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다. 명예수당 지급대상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안 제10조)
 - 1)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등 ⇒ 국가보훈대상자
 - 2) 공상군경 본인, 독립유공자 수권자 등 수혜 대상자 증가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97.3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1. 27.~12. 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5호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5.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6.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
7. 학력·경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8.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9.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지원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참여 단체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업 등에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 시행(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구인·구직 만남의 날	5	5	5	5	5	25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6	6	6	6	6	30
	일자리박람회	10	10	10	10	10	50
	찾아가는 지역 일자리센터 운영	4	4	4	4	4	20
	지역형 맞춤일자리사업	160	160	160	160	160	800
	소 계	185	185	185	185	185	925

○ 산출기초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1회 × 5백만원 = 5백만원
-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 콘테스트 개최 2백만원, 시상금 4백만원
- 일자리박람회 개최 : 1회 × 10백만원 = 10백만원
- 찾아가는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 운영비 2.5백만원, 참석자 보상금 1.5백만원
- 지역형 맞춤일자리 사업 : 인건비 90백만원, 교제 및 재료비 10백만원,
민간형 일자리사업 지원 60백만원

3. 관련의견 :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8-106
----------	----------

제 출 일	2018.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채용정보 제공,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박람회·설명회 개최, 청년 취업·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등

다.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 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업무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85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9. 28.~10.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6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를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경비 및”을 “경비와”로 한다.

제5조 제목 “(준용)”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 및 운영”을 “관리·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u>운영</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p> <p>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u>운용</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삭 제></p> <p>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p> <p>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국비 3천만원으로 군비는 해당사항 없음

4. 작 성 자

경제교통과장 김 진 태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07
----------	----------

제 출 일	2018.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국비 3천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7호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의”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 및”을 “법 제7조제1항제3항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을 “특별회계에 세입된 금액 범위에 한

정함”으로 한다.

제5조,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중전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의”를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중전 제8조) 중 “이 회계를 운영”을 “특별회계를 운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 제10조) 제목 “(준용규정)”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p><삭 제></p> <p>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제3조(세입)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에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거창군 일반회계로 부서의 전입금 5. 정부의 보조금 6. 거창군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폐지 2.~3.(생략) 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제3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폐지 2.~3.(생략) 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p><u>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u></p> <p><u>제5조(회계공무원 지정)</u>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건설교통과장, 출납 공무원은 교통담당주사로 한다.</p> <p><u>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u>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회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회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p> <p><u>제7조(세입징수)</u> ①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의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u>제8조(금고의 설치)</u>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p> <p><u>제9조(보조)</u>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u>제10조(준용규정)</u>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u>준한다</u>.</p>	<p><u>중 특별회계에 세입된 금액 범위에 한정함</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5조(세입징수)</u>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금고의 설치)</u>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p> <p><u><삭 제></u></p> <p><u>제7조(관리·운용)</u>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u>따른다</u>.</p>
---	---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 운영 :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군비	134	134	134	134	134	670
	계	134	134	134	134	134	670

3. 관련 의견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비, 인건비 등 지출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19년도 예산 833백만원 : 주차장 설치·관리·운영 관련 지출, 예비비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08
----------	----------

제 출 일	2018.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이를 계속 존속시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2023년 12월 31일

나. 상위법령 재기재·중복 규정 삭제·정비함(안 제3조, 현행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833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8호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르미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를 “부르미택시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자”를 “제1항에 따라 부르미택시 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자”를 “부르미택시 사업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부르미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비용의 신청) ①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부르미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르미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비용의 신청) ①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르미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삭 제></p>

[별지 서식]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1. 대상마을명 : 거창군 읍·면 마을

2. 신청자(법인/개인)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3. 지원신청액 :

4.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탑승일자	운행횟수	탑승인원	지원금 산출내역		
			운행요금	주민부담	지원신청액

5. 지급계좌

순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액(원)	비고

위 금액을 년 월 마을 부르미택시 탑승 비용으로 지원 신청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부르미택시 운행일지와 영수증 포함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 비용의 신청, 제5조 비용지원 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38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경제교통과장 김 진 태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09
----------	----------

제출일	2018. 11. 2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 중인 부르미택시 비용지원 대상자를 부르미택시사업자로 변경하여 부르미택시 운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르미택시사업 지원대상자 변경에 따른 제명과 목적조항 개정
- 나. 부르미택시 비용신청자를 변경함(안 제4조)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 ⇒ 부르미택시 사업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8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79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종전 제2조) 중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수승대관광지”로 “일대(297,679제곱미터)”를 “일대 297, 679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종전 제4조)제5호 중 “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라 한다.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 제8조)에 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

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중전 제9조) 제목 “(입장거절 및 퇴장)”을 “(입장거절과 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집단놀이(캠프파이어)”를 “집단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야영 및”을 “야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남/여)”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수송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297,679제곱미터)로 한다.</p>	<p>제3조(위치) 수송대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제곱미터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생략) 5. “시설”이란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축제극장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현행과 같음) 5. “시설”이란 수송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축제극장을 말한다.</p>
<p>제7조(시설이용료) (생략)</p>	<p>제4조(시설이용료) (현행 제7조와 같음)</p>
<p>제8조(시설이용료 감면)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 3. 고성방가, <u>집단놀이(캠프파이어)</u>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u>야영 및 취사행위</u> 등을 하는 사람 5. <u>천재지변(태풍, 호우 등)</u>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u>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u>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u> 8. 「노인복지법」에 따라 <u>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u>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u>한부모가족</u>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u>다문화가족</u> 11. 「주민등록법」 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u>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u> <p><신 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p> <p>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 3. 고성방가, <u>집단놀이</u>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u>야영, 취사행위</u> 등을 하는 사람 5. <u>천재지변</u>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현 행	개 정 안
<p>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p> <p>제10조~제14조(생략)</p>	<p>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p> <p>제7조~제11조(현행 제10조부터 제14조와 같음)</p>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u>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u>	<신 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u>그날</u> 예약을 취소할 때	반환하지 않음

- 반환기준 시간은 24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설비			
내용	사용시간			
	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인원			
	비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변경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 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무실	
				자택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속설비				
	그밖의사항				
변 경 사 유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취소 신청서

공연·행사명			
사용일자		사용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또는 대표자명(남 / 여)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05
----------	----------

제 출 일	2018.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소외자의 관광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제4항)

- 1)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2)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

나.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추가함(안 별표 2)

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 이용료 전액 반환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2.~11.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80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중전 제3조) 제목과 본문 중 “결산 및”을 “결산.”으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u>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u>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u>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부서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p><u>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u></p> <p><u>제3조(존속기한)</u>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제4조(예산편성·결산·운용)</u>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u><삭 제></u></p>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 나. 관련조문 : 제2조(설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국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4,472	4,800	5,000	5,200	5,200	24,672
군비	예비비 등		79	79	79	79	79	395
계			4,551	4,879	5,079	5,279	5,279	25,067

3. 관련 의견

매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시행

작성자 : 환경과장 최 정 제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10
----------	----------

제출일	2018. 11. 2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4,551백만원 확보예정

국비 4,472백만원, 군비 79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81호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중 “이 회계의 세출은”을 “특별회계 세출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 제6조)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 제8조) 제목 “(준용)”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p> <p>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p> <p>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p> <p>제5조(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 완료후의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6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p>	<p>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거창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p> <p><삭 제></p> <p>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p>

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출
납명령관은 건설교통과장, 출납공무원
은 건설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삭 제>

제7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
른다.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
- 나. 관련조문 : 제4조(세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	군비	733	733	733	733	733	3,665
	소계(a)	733	733	733	733	733	3,665
총 비용(a)		733	733	733	733	733	3,665

3. 관련 의견

「댐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사업, 균형 발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19년 합천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733백만원 확보예정

작성자 : 건설과장 전 정 규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11
----------	----------

제출 일	2018. 11. 23.
제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나. 상위법령 중복·재기재 규정 정비함(현행 제2조·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733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82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0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u> <u>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u> <u>은 지정게시대외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u> <u>하여 10일 이내 한 번만 할 수 있다.</u> <u>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0일 경과</u> <u>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u></p> <p><u>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u> <u>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u> <u>할 수 있다.</u></p>	<p><삭 제></p>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금지광고물 제작·표시(제5조제2항제3호)</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p> <p>가) 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미만 - 0.8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p>나) 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미만 - 1.3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 1.6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p>다) 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미만 - 2.3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미만 - 2.6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p>라) 면적 3제곱미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0.5제곱미터당 <p>2) 도로 외의 경우</p> <p>가) 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미만 - 0.8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p>나) 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미만 - 1.3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 1.6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p>다) 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p>법 제20조 제1항제1호·제1호의2</p>	<p>개당 12만원</p> <p>개당 17만원</p> <p>개당 25만원</p> <p>개당 <u>35만원</u></p> <p>개당 42만원</p> <p>개당 58만원</p> <p>개당 67만원</p> <p>개당 92만원</p> <p>개당 117만원</p> <p>개당 130만원</p> <p>개당 15만원을 더한 금액</p> <p>개당 7만원</p> <p>개당 10만원</p> <p>개당 13만원</p> <p>개당 17만원</p> <p>개당 25만원</p> <p>개당 42만원</p>
<p>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p>	<p>근거 법조문</p>	<p>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미만 - 2.3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미만 - 2.6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3제곱미터 -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0.5제곱미터당 		<p>개당 50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만원을 더한 금액</p>
<p>나. 현수막</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미만 -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p>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3만원</p>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미만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p>장당 17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p>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p>장당 <u>35만원</u> 장당 50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80만원 장당 15만원을 더한 금액</p>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p>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 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12
----------	----------

제출일	2018. 11. 2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 없이 법령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축소하여 주민의 이용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 삭제함(안 제20조)

1) 조례 : 현수막 게시기간 10일 ⇒ 삭제

2) 법령 : 현수막 게시기간 15일 이내

나. 법령 위임범위 보다 낮게 규정된 과태료금액 조정함(안 별표 6)
도로 입간판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현수막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과태료 금액 : 33만원 이상 ⇒ 35만원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5조, 별표 1, 별표 8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83호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거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전담조직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문화재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상인조직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와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7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2.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상공회의소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4.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행정기관 공무원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제9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조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연체이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2조(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text{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8-113
----------	----------

제출일	2018. 11. 2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함(안 제3조~안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지원
- 다. 전문가 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 마.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9조·제11조·제28조·제30조의2·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조·제11조·제14조·제3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9. 12.~10. 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조례 제2484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

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 지원사업
2.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산품에 대한 지원사업
3. 축산환경개선 시설 지원사업
4.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5. 농업재해(「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 복구사업
6. 농산물 과잉 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경영 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 5천만원 이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유지 등을 위한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금융기관과 협약 등) ① 군수는 농업발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융자금 대출·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생산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③ 그 밖에 용자금 대출, 용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8조(용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①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용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용자지원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2. 용자금 상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의 대표
2. 농업인단체·조직 대표나 생산자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로 본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제6조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제10조 농업발전 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나. 비용발생 요인

- 1)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법인의 농업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1퍼센트 이자로 매년 30억규모의 융자금 대출 시행, 선정된 금융기관에 1퍼센트 수수료 지급
- 2)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 3) 2013년까지 농협자금으로 융자사업 시행, 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2021년까지 지급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단위: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융자금지원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위원회수당	4,400	4,400	4,400	4,400	4,400	22,000
이자차액 보전금	30,000	20,000	10,000	-	-	60,000
예비비	3,009,558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9,558
소계	6,043,958	6,024,400	6,014,400	6,004,400	6,004,400	

- 예비비 : 농업재해 등 예측하지 못하는 긴급한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비 편성

나. 추계의 결과

2019년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산 179억원 편성 요구

작성자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응 록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8-114
----------	----------

제 출 일	2018.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시키고자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2023년 12월 31일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 간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규정 삭제·정비함

다. 농업발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79억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1. 2. ~11.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장·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인구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민원소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7.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8. 행복나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4.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직속기관 소장·과장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행복농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5조(사업소 소장 직급) ①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읍장·면장 등 직급) ① 읍·면에 두는 읍장과 면장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부읍장과 부면장 직급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③ 읍에 주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하고, 지역산업과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7조(분장사무)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직급·직렬별 정원) 거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복지담당 정원관리) 거창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 3에 별도 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제4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국장·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제8조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거창군 공무원국외여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

통과장”으로 한다.

④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항노화산업과장”을 각각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⑤ 거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항노화산업과장”을 각각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⑦ 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⑧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제2호, 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각각 한다.

⑨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⑩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실과단”을 “담당관·과”로 한다.

⑪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표 1]

읍장·면장 직급(제6조 관련)

직 위	직 급
거창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주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분장사무(제7조관련)

1.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분장사무
기획예산 담당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의 기획·조정·통제 업무 2. 군정시책 종합평가 업무 3. 군정 중장기 계획수립 업무 4. 공약사업과 지시, 현안사항 종합관리 업무 5. 군 의회 운영 협력·지원·조정 업무 6.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 총괄 7. 군정종합 우수시책 대외 응모 8. 공보·홍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업무 9.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 및 언론 보도내용 분석 관련 업무 10. 군정 종합 기획홍보 관련 업무 11. 보도자료 작성 배포와 브리핑룸 관리 업무 12. 언론 매체 관리에 관한 업무 13. 군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14. 지방채 등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업무 15. 예산사업의 투자 심사에 관한 업무 16. 지방재정의 종합기획과 지방공기업·경영수익사업 관한 업무 17. 사업별 예산편성 운영 18.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업무 19. 보조사업에 관한 업무 20. 예산운용에 관한 업무 21. 감사계획의 수립·감사와 특정감사 등에 관한 업무 2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23. 법규위반 비위공무원 조사·처분과 고충민원 처리 24.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업무와 면책·소청 심사 관련 업무 25. 계약심사, 일상감사 운영 26.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훈령·예규에 관한 업무 27. 소송, 행정심판 관련 업무 28. 인구동태 조사와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29. 정책수립과 성과측정에 필요한 행정통계에 관한 업무 30. 외국인 통계와 관리에 관한 업무 31. 규제 종합계획 수립과 규제개선에 관한 업무 32. 그 밖에 기획, 공보, 예산, 감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2. 행정복지국

부서	분장사무
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행사·의전 총괄 업무 2. 공무원 인사·상훈·조직·교육에 관한 업무 3. 공무원 정·현원 관리,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정·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업무 5. 지방행정구역 조정, 읍·면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6. 군민화합·의식개혁운동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업무 7. 주요시책 추진 8. 일제강점 피해 관련 업무 9. 공무원 해외여행 등 공무원 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10. 선거에 관한 업무 11. 서무, 공인관리, 보안에 관한 업무 12. 문서통제, 우편물 수발, 사무관리에 관한 업무 13. 공무원 보수·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14. 공무원단체 운영지원, 공무원노조에 관한 업무 15.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 16.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17. 기록물 관리·수집·보존·활용에 관한 업무 18.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업무 19.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에 관한 업무 20. 주민투표, 지방분권,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지방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21. 기관·단체 현황관리, 주요단체 등 대외협력·지원에 관한 업무 22. 군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 23. 공통기반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업무 24.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25. 그 밖에 다른 담당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미래전략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안·역점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2. 공모사업 총괄 3.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4. 창업, 공장설립 승인 관련 업무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7.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업무 8. 승강기산업벨리 조성에 관한 업무 9. 승강기산업 관련업체, 유관기관 유치와 지원에 관한 업무 10. 투자 프로젝트사업 개발 관련 업무 11. 국내·외 기업, 산업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미래전략,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인구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정책업무 전반 2. 인구증가 종합계획 수립 3. 저출산·고령·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4.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추진 5. 교육발전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인재육성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7. 초·중·고·대학 육성지원 업무 8.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 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 10.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 11. 청소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2. 도서관 관리·운영 업무 13. 그 밖에 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도서관에 관한 업무
<p>민원소통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사무 접수·처리 부서 종합조정 관련 업무 2. 민원업무연구, 시책개발에 관한 업무 3. 창구민원 즉결 처리 관련 업무 4. 인터넷민원, G4C민원, 여권, 행정정보공개, 국민신문고 업무 5.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6.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지적공부 보존관리 업무 8.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업무 9.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업무 10.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업무 11.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12.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업무 1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14.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업무 15.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업무 16. 공간정보 관련 업무 17. 식품접객업 관리 업무 18.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리 업무 19. 공중위생업 관리 업무 20. 위생면허 관리 업무 21.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22.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23. 도해지적 수치화 업무 24. 지적확정측량 업무 25. 그 밖에 민원, 지적, 토지정보, 위생, 지적 재조사에 관한 업무
<p>재무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업무 2. 세원발굴,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 3.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4.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 5.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에 관한 업무 6.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에 관한 업무 7. 세외수입 징수·지도, 체납징수 총괄 관리에 관한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세입금 관리와 결산에 관한 업무 9.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0. 국채와 지방채 소화에 관한 업무 11. 자금배정, 자금운영에 관한 업무 12.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업무 13.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4. 물품구입, 출납보관 관리에 관한 업무 15. 청사, 관사 관리에 관한 업무 16.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관한 업무 17.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업무 18.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에 관한 업무 19.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업무 20. 그 밖에 부과, 경리, 세입관리, 재산관리, 부동산평가에 관한 업무
문화관광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예술 활동 지원 업무 2. 향교 및 종교단체의 지원 관리 3. 군지, 향지 편찬에 관한 업무 4. 공연장, 공연에 관한 업무 5. 문화산업에 관한 업무 6. 거창문화재단, 거창문화원에 관한 업무 7. 관광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업무 8. 거창한마당축제 관련 업무 9. 관광상품 및 관광홍보에 관한 업무 10.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 11. 온천지구 지정, 개발관리 업무 12. 관광자원 개발 13.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14. 매장문화재 등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 15.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 16. 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 17. 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 18.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에 관한 업무 19. 수승대 운영에 관한 업무 20. 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업무 21.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정책, 관광시설, 문화재, 박물관, 수승대에 관한 업무
복지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2.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업무 3. 아립1004운동 추진에 관한 업무 4.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관리와 운영 5.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6.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체 지원 9. 긴급지원 및 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11. 복지대상자 신규·변경 신청 조사 12. 사회보장급여 자격 변동, 사후관리 13.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관리 15.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급여지원 16. 저소득층 복지지원 17. 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자활근로사업관리 18.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1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20. 그 밖에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기초생활에 관한 업무
행복나눔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 시설, 단체 관련 업무 2. 노인사회참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3.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전반 4. 장기요양관련 업무 전반 5.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6.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업무 7.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 8. 장애인복지 시설, 단체 운영에 관한 업무 9. 장애인자립, 사회참여활동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관련 업무 11. 여성권익신장,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12.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업무 13.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업무 14. 보육료지원에 관한 업무 15. 어린이집 설치·인가·관리에 관한 업무 16.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17.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에 관한 업무 18.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업무 19. 가정위탁,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0.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1. 그 밖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드림아동에 관한 업무

3. 경제산업국

부서	분장사무
경제교통과	1.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전통시장 육성 관련 업무 3.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업무 4.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5. 공산품 품질관리 관련 업무 6. 통상진흥 관련 업무 7. 담배소매인 등록 관련 업무 8. 통신·방문판매업 관련 업무 9.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업무 10. 노동단체관리 업무 11. 대부업·저축·금융기관 관리 관련 업무 12. 문화거리 활성화, 유지관리 관련 업무 13. 공예품, QC상품관리 관련 업무 14. 일자리 발굴, 추진 관련 업무 15. 채용박람회, 일자리안정자금 등 관련 업무 16. 전기, 석유, 가스,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 17. 태양광, 광업권 관련 업무 18. 교통안전 관련 업무 19. 교통질서 계도, 단속 관련 업무 20. 여객, 화물자동차 관리 관련 업무 21. 여객운수업 재정지원 관련 업무 22. 그 밖에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총괄, 에너지, 교통에 관한 업무
안전총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안전, 재난관련 종합기획·조정, 평가 등 총괄에 관한 업무 2.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3. 재난상황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 4. 유·도선장 관리 업무 5.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6. 실종 등 인적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7.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대책수립 추진 업무 8.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9. 유관 기관단체 재난관련 협의 조정 업무 10. 재해영향성평가 업무 11.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업무 12.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안전점검·관리업무 13. 방재 전산훈련 업무 14. 안전문화운동 전개, 교육 홍보 업무 15.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관련 업무 16.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운영관련 업무 17. 생활불편해소 관련 업무 1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19. 민방위계획수립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업무 20.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업무 21. CCTV관제에 관한 업무

	<p>22. 행정통신망,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23. 그 밖에 안전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관제에 관한 업무</p>
<p>산림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2.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관한 업무 3. 토석·토사 채취 허가 관련 업무 4. 양묘, 조림사업, 사방사업 관련 업무 5. 단기임산물 관련 업무 6. 산지소득, 임업단체 관련 업무 7. 화강석 특화 육성 관련 업무 8. 보안림 지정·해제 관련 업무 9. 산지전용허가, 변경 관련 업무 10.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산림사범 관련 업무 11. 불법 산림훼손에 관한 업무 12. 산림병해충 관련 업무 13. 임도시설 관리 관련 업무 14. 산림경영계획 관련 업무 15. 제재소 지도·감독 관련 업무 16. 산불예방, 진화 관련 업무 17.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및 보호 관련 업무 18. 도시공원·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19. 가로수 식재·관리 관련 업무 20. 푸른 거창가꾸기 관한 업무(푸른경남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21. 녹지공간 조성·관리 업무 22. 꽃길·꽃동산 조성·관리 업무 23. 향노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 24. 향노화 힐링 특구 관련 업무 25.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 26. 산림 내 편의시설에 관한 업무 27. 치유의 숲, 등산로(숲길) 조성·관리 2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업무 29. 그 밖에 산림조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향노화에 관한 업무
<p>환경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본계획, 환경정책에 관한 업무 2. 대기, 소음·진동, 토양, 악취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 3.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4.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업무 5. 탄소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사범 수사 7. 미세먼지 감축 추진 사업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소각시설 위탁 운영 관리 10. 생활·건설·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의료) 관련 업무 12.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관리 13. 영농폐기물(집하장 등) 시설물 설치·관리 14. 수질보전, 수질개선 업무 추진 15. 낙동강수계주민지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16. 분뇨,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18.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19. 지하수 관리업무 추진 20.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등 자연보호 업무추진 21. 야생 동·식물 관리 및 보호 22. 생태습지원, 생태공원 관리 23.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관리업무 추진 24. 창포원, 국화원, 연꽃수련원 등 수변생태공원 관리 25. 방문자센터, 온실 등 유지 관리 26.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운영 27. 환경정책, 자원순환, 수질관리, 자연환경, 창포원에 관한 업무
건설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 관리 업무 2.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업무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업무 4.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업무 5. 보상에 관한 업무 6. 건설기계 관리감독 관련 업무 7. 농지개발사업계획 수립·시행 업무 8. 농업용수개발, 개·보수사업 추진 업무 9.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 10. 농업기반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개 개선 업무 11.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 12. 한해대책, 장비 유지관리 업무 13. 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14. 하천공사 시행관련 업무 15. 하천의 개량·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 16.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업무 17.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시행 업무 18.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19. 도로굴착 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 업무 20. 교량 유지, 사도관리에 관한 업무 21. 과적차량 단속 업무 22. 그 밖에 건설, 농업기반, 하천, 도로에 관한 업무
도시건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기본계획·관리계획의 입안과 시행 관련 업무 2. 군계획시설 사업 관련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개발행위 허가·협의, 불법개발행위 관련 업무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관련 업무 5.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 6.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관련 업무 7. 군계획구역내 도시정비 관련 업무 8.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업무 9.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설치 관련 업무 10.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관련 업무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관련 업무 12.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관리 관련 업무 13.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 14. 주거 급여 관련 업무 15.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업무 16.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관련 인·허가 관련 업무 17. 농지전용협의·허가, 용도변경 관련 업무 18.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업무 19.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관련 업무 20.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준비, 사업추진 관련 업무 21.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 협의체 등 운영 관련 업무 22.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도시경관 계획 관련 업무 23. 친환경 녹색 건축물 사업 추진 관련 업무 24. 그 밖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행정, 건축민원에 관한 업무
--	--

4.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장사무
농업축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 내 직원 인사·복무·회계·예산 운영 관련 업무 2. 농정시책 및 사업의 확인, 심사, 분석, 평가 3. 물품과 재산 관리 업무 4. 농업·농촌발전 대책 관련 업무 5. 농지보존, 불법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 6. 농림사업 계획 수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관련 업무 7. 농산물 대축제 관련 업무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업무 9. 수입개방 대응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시책 발굴 추진 관련 업무 10. 자유무역협정 농·수·축산업 대책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관련 업무 11.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종합대책 관련 업무 12. 농업발전기금, 진흥기금 관련 업무 13. 강소농과 농업경영개선 지원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지도·연구공무원 능력 향상에 관한 업무 15.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 16. 농업인단체·농업인학습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17.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관련 업무 18. 농업인 영농교육, 농업인대학 관련 업무 19.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 업무 20.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관련 업무 21. 후계 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관리 업무 22.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관련 업무 23. 축산물 기반조성 및 유통개선사업 관련 업무 24. 축산단체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25. 가축개량 및 송아지 생산 관련 업무 26. 조사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 업무 27. 내수면 어업, 수산물 관련 업무 28. 축산 재해, 생산이력제 사업 관련 업무 29. 친환경축산, 축산분뇨 처리 관련 업무 30. 경관보전직불 업무 31. 가축방역 대책,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 32. 도축장 시설 설치·지원·관리에 관한 업무 33. 유기동물 등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34. 공수의 관리, 동물병원·약국 관리 관련 업무 35. 축산물 판매·유통 대책 관련 업무 36.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축산 시범사업 관련 업무 37. 농업기계화사업 관련 업무 38. 그 밖에 농정, 농업지원, 축산, 가축방역, 농기계에 관한 업무
농업기술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 2. 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관련 업무 3. 식량작물 보급종 공급, 채종단지 운영 관련 업무 4.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관련 업무 5. 농약·비료 관리 및 지원 관련 업무 6. 농촌일손 돕기, 농업재해 업무 7. 정부 양곡관리 관련 업무 8. 원예, 특작분야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 관련 업무 9. 원예 특작 적정 생산 계획, 기술지도 업무 10. 종자산업법 관련 업무 11. 특화작목 육성, 시설물 재해대책 관련 업무 12. 잠업 생산 지원 및 실증시험 업무 13. 과수재배 기술보급·지원 관련 업무 14. 거창 사과 딸기 산업특구 관련 업무 15. 사과테마파크, 사과이용체험센터 관리운영 업무 16. 농작물 재해보험, 거창명품사과 홍보 관련 업무 17. 과수 시범사업,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FTA기금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업무 19. 탐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및 관원관리 IPM사업 업무 20.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21. 친환경농업 및 토종농산물 직불금 관련 업무 22.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및 시범사업 관련 업무 23. 친환경 비료 지원에 관한 업무 24.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련 업무 25. 천적생태과학관 관련 업무 26. 실증시범포 운영 관련 업무 27. 조직 배양실 운영 관련 업무 28. 농약잔류검사 및 토양정밀 검정에 관한 업무 29. 그 밖에 식량작물, 원예특작, 과수,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업무
<p>행복농촌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복농촌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총괄·조정 2.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역량강화 교육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4. 마을만들기 관련 DB구축과 법령·제도 개선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공모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 사후유지 관리 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8. 농산물 수출 종합대책, 해외시장개척 9. 수출농가·수출업체 육성과 수출활성화 지원 업무 10. 산지유통 종합계획 추진 11. 서북부경남 산지유통센터(APC)운영·지원 관련 업무 12. 산지유통시설 관련 업무 13. 산지유통·통합마케팅 고도화 전략 수립 14. 통합마케팅 조직과 공선출하조직육성 관련 업무 15. 농산물공동브랜드(거창韓) 육성·지원 관련 업무 16.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육성·지원 업무 17. 농산물 물류 표준화, 원산지표시, 생산이력제 업무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19.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지원센터 운영 20.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업무 21. 농촌자원융복합산업화 지원 업무 22. 향토음식, 전통주 육성 관련 업무 23. 귀농·귀촌 관련 업무 24. 귀농귀촌인 상담센터 운영 25. 도시민농어촌유치지원 관련 업무 26. 농촌민박 및 관광농원 관련 업무 27. 농촌체험 및 사이버농원 육성·지원 관련 업무 28. 거창푸드플랜 수립·시행 29.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30. 학교급식 지원 관련 업무

	31.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관리 32.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업무 33. 농산물직거래 장터, 거창군 쇼핑몰 관련 업무 34. 그 밖에 농촌진흥, 농촌개발, 수출유통, 농촌융복합, 귀농귀촌, 지역식품에 관한 업무
--	---

5. 사업소

부서	분장사무
수도사업소	1.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2. 상·하수도·하수처리장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관한 업무 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4.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간이급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6.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9. 취·정수장 운영에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1. 체육진흥 종합 기획·조정 2. 체육단체 육성에 관한 사무 3. 체육시설업, 수상레저사업 지도 관리 4. 골프장 개발 관리 5. 스포츠파크 총괄 운영 관리 6. 체육시설 유지·관리, 개발에 관한 사무 7. 읍면 체육시설(운동기구) 총괄 관리 8.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9.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 10. 체육지도자, 시설전문관리인 채용 및 운영 관리 1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업무 12.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13.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14.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업무
거창사건사업소	1. 거창사건사업소 운영계획 수립과 종합조정 2. 위령제, 추모식 등 각종 문화행사 기획운영 3. 거창사건사업소 시설물 유지 관리 4. 국화전시회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거창사건에 관한 업무

6. 읍·면

부서	분장사무
읍·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리 지도 관련 업무 2. 선거 및 통계 관련 업무 3. 세입징수 및 독려 관련 업무 4. 세원조사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6.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관련 업무 7. 민방위 관련 업무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업무 9.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복지 관련 업무 1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11. 농업, 축산, 산림, 경제 관련 업무 12. 소규모 주민사업 관련 업무 13. 광고물 관리 업무 14. 재난·재해 관련 업무 15.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16. 그 밖에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8-58
----------	---------

제출연월일	2018. 12. 19.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직급,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 직급, 부서별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개편

- 1) 현행 : 2실·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2읍·면
- 2) 조정 : 2국·1담당관·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나. 담당관 설치 : 기획예산담당관

다. 2국 설치

- 1) 행정복지국 :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 2)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라. 공무원 일반직 정원조정(증23명)

- 1) 현행 : 647명(4급(5급) 4명, 5급 35명, 6급 177명, 7급 195명, 8급 156명, 9급 80명)
- 2) 개편 : 670명(4급(5급) 4명, 5급 38명, 6급 183명, 7급 202명, 8급 161명, 9급 8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1. 29.~1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규칙 제1251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 사항에 관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전결 기준) 군수·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결재사항

- 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 설정
- 나.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결정
- 다. 주요 업무계획 조정

-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마.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 2. 부군수 전결사항
 -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수립
 -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집행
 - 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 3. 국장 전결사항
 -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 나. 과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 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 4. 담당관·과장과 소장 전결사항
 -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 라.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집행
 - 마. 소관 업무의 지도와 관리
- 5. 6급 이하 담당자 전결사항
 -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 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제4조(전결방법) ① 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은 별표에 따라 전결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제5조(전결처리 예외) ① 별표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적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합의) 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주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 보고)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다수인 관련 민원
4. 군과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
5. 산하 단체장 임명 등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8-61
----------	---------

제출연월일	2018. 12. 19.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부서 간 사무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에 따른 국장의 사무전결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기구와 사무의 신설·조정에 따른 부서별 사무와 전결권자 변경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1. 29.~12.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규칙 제1252호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에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부서
1	광고물 등의 신고변경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도시건축과
2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도시건축과
3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수수료 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도시건축과
4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도시건축과
<p>▷제1호~제4호 삭제 : 읍면에 재위임이 아닌 위임사항으로 거창군 읍면위임조례 별표에 규정되어있음,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해야함</p>			
5	<p>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점용허가 및 고사 - 하천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 원상회복의무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하천점용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p>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항 제6호(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6호 제외)</p> <p>하천법 제37조</p> <p>「하천법」 제48조(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한정한다)</p> <p>「하천법」 제74조</p> <p>하천법 제89조</p>	건설과
6	<p>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사용허가, 임대차 계약 포함. 다만, 임대차계약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는다)</p>	<p>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p>	복지정책과
<p>▷제6호 삭제 : 군수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 아님.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음.</p>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8-62
----------	---------

제출연월일	2018. 12. 19.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한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삭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성을 강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재위임하는 사무 중 하천점용업무 삭제(안 별표)

○ 토지의 점용허가 및 고시, 하천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하천점용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나. 읍·면에 재위임하는 사무가 아닌 위임 사무 규정 삭제(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1. 29.~12.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훈령 제426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창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인 분장사무) 본청 국 주무과의 일반적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그 밖에 국 사무 중 다른 담당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세부분장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세부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8-59
----------	---------

제출연월일	2018. 12. 19.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의 최종구성 단위인 담당을 신설·변경·통합·폐지 하고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담당 전환, 신설, 통합

- 1) TF팀 ⇒담당 전환(4담당) : 창포원담당, 도시재생담당, 치매안심담당, 지역식품담당(학교급식지원TF + 거창푸드, 거창몰 운영)
- 2) 7담당 신설 : 인구정책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드림아동담당, 시장경제담당, 통신관제담당, 정수장담당, 국민체육센터담당
- 3)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 향노화산업과 향노화산업담당 ⇒산림과 향노화담당

나.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분장사무 이관

- 1) 인구정책 업무 : 기획감사실 ⇒인구교육과
- 2) 공유경제 업무 : 기획감사실 ⇒경제교통과
- 3) 미래전략, 공모사업 총괄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 4) 소청 업무 : 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 5) 정보화마을 관리 업무 : 행정과 ⇒경제교통과
- 6) 향노화산업 업무 : 향노화산업과 ⇒산림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조,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훈령 제427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8-60
----------	---------

제출연월일	2018. 12. 19.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배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구 분	정 원			직렬별 직급별 정원 증감내역	
	현행	변경	증감	감	증
전체정원	679	702	23		
기획예산담당관	25	24	-1	서기관, 행정·사복·시설5급 -1 행정 6급 -1	행정5급 +1
행정과	28	27	-1	전산·방송통신 6급 -1 기계운영·운전·위생·방호6급 -1 행정·전산·방송통신8급 -1	서기관, 행정5급 +1 기계운영·사무운영·운전·위생6급 +1
미래전략과	14	15	1		행정7급 +1
인구교육과	15	18	3	행정·전산·통신6급 -1 행정8급 -1	행정6급 +1 행정·전산·방송통신6급 +1 행정·농업8급 +1 행정·사회복지8급 +1 행정9급 +1
민원소통과	24	25	1	서기관, 행정·보건·시설5급 -1	행정·보건·시설5급 +1 세무6급 +1
재무과	28	28	0	세무6급 -1 공업6급 -1 기계운영·운전·위생·방호6급 -2	행정·세무6급 +1 행정·공업7급 +1 기계운영·사무운영·운전·위생6급 +2
문화관광과	25	26	1	기계운영7급 -1 위생9급 -1	행정·공업7급 +1 행정9급 +1 사무운영9급 +1
복지정책과	28	16	-12	사회복지6급 -2 행정·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7급 -3 행정·사회복지7급 -2 행정·사회복지8급 -1 사회복지8급 -2 사회복지9급 -1 방호9급 -1	행정8급 +1
행복나눔과	0	15	15		행정·사회복지5급 +1 사회복지6급 +2 행정·사회복지6급 +1 사회복지·보건6급 +1

구 분	정 원			직렬별 직급별 정원 증감내역	
	현행	변경	증감	감	증
					사회복지7급 +3 행정·사회복지7급 +3 사회복지8급 +2 행정·사회복지8급 +1 사회복지9급 +1
경제교통과	18	20	2	사무운영7급 -1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시설5급 +1 행정7급 +1 행정8급 +1
안전총괄과	15	18	3	행정·방재7급 -1 행정·시설8급 -1	전산·방송통신6급 +1 행정·시설7급 +1 전산·방송통신7급 +1 행정·방재8급 +1 행정·시설9급 +1
산림과	19	22	3		행정·농업7급 +1 행정·농업·시설8급 +1 행정·농업·녹지9급 +1
환경과	21	23	2		행정·농업·시설7급 +1 행정·공업·환경8급 +1
건설과	17	18	1		행정·시설7급 +1
도시건축과	24	27	3		행정·시설7급 +1 행정·시설8급 +1 행정·농업·시설9급 +1
농업축산과	24	24	0	수의7급 -1 행정·농업8급 -1	농업·공업6급 +1 농업·수의7급 +1
농업기술과	25	21	-4	행정·농업6급 -1 행정·농업7급 -1 행정·농업8급 -1 농업9급 -1	
행복농촌과	21	22	1		행정·전산·농업6급 +1
보건소	64	67	3		보건·간호6급 +1 보건·간호7급 +1 사회복지·간호8급 +1
수도사업소	22	23	1		행정·공업·환경6급 +1
체육시설사업소	11	12	1		행정·공업·시설6급 +1
거창사건사업소	6	6	0	행정·시설5급 -1	행정·녹지·농업·시설5급 +1

구 분	정 원			직렬별 직급별 정원 증감내역	
	현행	변경	증감	감	증
				행정·시설7급 -1 행정9급 -1	행정·농업·복지·시설7급 +1 행정·농업9급 +1
거창읍	40	40	0	사무운영9급 -1	행정·농업6급 +1
고제면	13	13	0	행정·농업·시설5급 -1 행정·복지·농업6급 -1	행정·농업·시설·보건5급 +1 행정·복지·농업·보건6급 +1
마리면	13	13	0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6급-1 사무운영7급 -1	행정·세무·농업6급 +1 행정·농업7급 +1
신원면	13	13	0	행정·농업·시설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6급 -1	행정·농업·시설·보건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6급 +1
가조면	17	17	0	행정·세무·농업6급 -1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6급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 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상품권 구매와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 훈령 제428호

거창군 상품권 구매와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품권의 구매·사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은 정부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거창사랑상품권 구매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여러 부서와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④ 상품권 관리자와 재무과장은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거창사랑상품권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사용 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제7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

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증명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배부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붙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명서류

제9조(상품권의 보관)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 후 10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보관의뢰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84조에 따라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금고 지급 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87조를 준용한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경비 검사계획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 및 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권 구매·사용 내역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

연 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결 재			
	구매 일자	예산 과목	결제 방법	구매 방법	수 량				구매 처	배부 일자	배부처	배부 수량	잔량	수 령 인		담당 자	담당	과장
					용도	품명	금액(원)	장수						주소 (소속)	서명			
1																		
2																		
3																		
4																		
5																		
6																		

<기재요령>구매방법은 통합 또는 개별 중 택일, 품명은 상품권 종류를 기입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0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80-173(1980.07.1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04호선) 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04호선)	웅양	노현	소로	2	204	133	8	1,162	웅양면 노현리 229-6	웅양면 노현리 144-1	경고 1980-173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04호선)	웅양	노현	소로	2	204	133	8	1,62	웅양면 노현리 229-6	웅양면 노현리 144-1	경고 1980-173	

-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노현리(소로2-20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 당초 : 2018. 12. 31

- 변경 : 2019.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계				7,307	1,116					당초
계				7,307	1,162					변경
1	웅양면	229-6	도	46	10		거창군			당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노현리		도	46	10		거창군			변경
2	웅양면 노현리	229-9	대	106	4		거창군			당초
			대	106	4		거창군			변경
3	웅양면 노현리	1407-1	도	27	6		국(건설부)			당초
			도	27	6		국(건설부)			변경
4	웅양면 노현리	1411-5	구	21	5		국(농수산부)			당초
			구	21	5		국(농수산부)			변경
5	웅양면 노현리	228-3	대	125	3		거창군			당초
			대	125	3		거창군			변경
6	웅양면 노현리	229-10	대	135	13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	한*록			당초
			대	135	13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	한*록			변경
7	웅양면 노현리	1407	도	1,332	160		국(건설부)			당초
			도	1,332	160		국(건설부)			변경
8	웅양면 노현리	146-2 (146-9)	대	521	40	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24번길 *	김*선	근저당	*조합	당초
			대	521	33	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24번길 *	김*선	근저당	*조합	변경
9	웅양면 노현리	228-6	대	22	22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	곽*림	근저당	*조합	당초
			대	22	22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	곽*림	근저당	*조합	변경
10	웅양면 노현리	1411-8	구	863	85		국(농수산부)			당초
			구	863	85		국(농수산부)			변경
11	웅양면 노현리	146-1	잡	1,902	211		거창군			당초
			잡	1,902	221		거창군			변경
12	웅양면 노현리	145-2	잡	807	331		거창군			당초
			잡	807	331		거창군			변경
13	웅양면 노현리	144-2 (144-3)	답	730	4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숙			당초
			답	730	4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숙			변경
14	웅양면 노현리	144-2 (144-4)	답	730	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숙			당초
			답	730	4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숙			변경
15	웅양면 노현리	144-1	답	670	58		거창군			당초
			답	670	58		거창군			변경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85-211(1985.12.28.)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21호선) 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창남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3-21호선)	거창	대평	소로	3	21	213	6	1,282	거창읍 대평리 1452-23	거창읍 대평리 1485-140	경상남도 고시 1985-211호 (1985.12.28.)	
도시 계획 시설	창남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3-21호선)	거창	대평	소로	3	21	213	6	1,282	거창읍 대평리 1452-23	거창읍 대평리 1485-140	경상남도 고시 1985-211호 (1985.12.28.)	

-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창남초등학교 주변(소로3-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 당초 : 2018. 12. 31

- 변경 : 2019.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계				7,949	1,282					당초
계				6,262	1,277					변경
1	거창읍	1452-23	구	63	61		국(농림수산부)			당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대평리	1452-23	구	63	61		국(농림수산부)			변경
2	거창읍 대평리	1473-3	도	66	66		국(국토교통부)			당초
		1473-3	도	66	66		국(국토교통부)			변경
3	거창읍 대평리	1232-39	종	137	137	마산시 완월동 *	재단법인*재단			당초
		1232-39	종	137	137		거창군			변경
4	거창읍 대평리	1232-38	도	42	42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	이 * 식			당초
		1232-38	도	42	42		거창군			변경
5	거창읍 대평리	1232-1	대	225	36	거창읍 대평리 *	이 * 공			당초
		1232-4 2	대	34	34		거창군			변경
6	거창읍 대평리	1231-4	대	93	15	남상면 둔동리 *	최성영			당초
		1231-13	대	15	15		거창군			변경
7	거창읍 대평리	1227	대	46	31	거창읍 대평리 *	김 * 희			당초
		1227	대	46	31	거창읍 대평리 *	김 * 희			변경
8	거창읍 대평리	1170-1	대	294	65	거창읍 대평리 *	이 * 휘			당초
		1170-3	대	69	69		거창군			변경
9	거창읍 대평리	1163	대	288	99	거창읍 대평리 *	김 * 기			당초
		1163	대	288	99	거창읍 대평리 *	김 * 기			변경
10	거창읍 대평리	1485-163	대	75	39		거창군			당초
		1485-163	대	75	39		거창군			변경
11	거창읍 대평리	1485-9 6	도	53	4		국(국토교통부)			당초
		1485-9 6	도	53	4		국(국토교통부)			변경
12	거창읍 대평리	1234-5	학	73	73		경상남도(교육감)			당초
		1234-5	학	73	73		거창군			변경
13	거창읍 대평리	1473-2	대	112	6		거창군			당초
		1473-2	대	112	6		거창군			변경
14	거창읍 대평리	1233-3	학	185	185		경상남도(교육감)			당초
		1233-3	학	185	185		거창군			변경
15	거창읍 대평리	1233-1	대	433	49		경상남도(교육감)			당초
		1233-4	대	44	44		거창군			변경
16	거창읍 대평리	1231-7	대	264	66	거창읍 대평리 *	정 * 호			당초
		1231-14	대	64	64		거창군			변경
17	거창읍 대평리	1231-2	도	588	25	동동	신 * 재			당초
		1231-2	도	588	25	동동	신 * 재			변경
18	거창읍 대평리	1224	대	66	4	거창읍 창남4길 *	김 * 희			당초
		1224	대	66	4	거창읍 창남4길 *	김 * 희			변경
19	거창읍 대평리	1226	대	79	46	거창읍 대평리 *	백 * 범			당초
		1226	대	79	46	거창읍 대평리 *	백 * 범			변경
20	거창읍 대평리	1171	대	631	27	거창읍 대평리 *	정 * 자			당초
		1171-1	대	27	27		거창군			변경
21	거창읍	1473-14	도	2,70 9	87		국(국토교통부)			당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대평리	1473-14	도	2,709	87		국(국토교통부)			변경
22	거창읍 대평리	1485-43	대	69	50		국(기획재정부)			당초
		1485-43	대	69	50		국(기획재정부)			변경
23	거창읍 대평리	1485-164	도	293	9		국(국토교통부)			당초
		1485-164	도	293	9		국(국토교통부)			변경
24	거창읍 대평리	1485-40	대	1	1		국(기획재정부)			당초
		1485-40	대	1	1		국(기획재정부)			변경
25	거창읍 대평리	1485-140	도	1,064	59		국(기획재정부)			당초
		1485-140	도	1,064	59		국(기획재정부)			변경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2008.9.25.)로 결정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21.

거 창 군 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주차장(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주차장	가조면 수월리 산15-5일원	5,000	증)208	5,208	거고43호 (08.9.25)	경미한 변경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주차장	•구역 변경 -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15-5일원 - 면적 : 5,000m ² →5,208m ² (증)208m ²)	• 거창군 향노화 힐링랜드 조성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반영한 군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거창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정비사업

다. 사업규모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5,000.0	4,634.0	1,446.61	1,446.61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 (2008.9.25.)
				5,208.0	4,810.0	1,446.61	1,446.61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산림과장)

마. 사업기간

○ 당초 : 2018. 8. 23. ~ 2018. 12. 31

○ 변경 : 2018. 8. 23. ~ 2019. 03. 31

바.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자.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026	4,634					
				7,026	4,810					
1	가조면 수월리	산15-5	도	1,423	1,259		거창군			
				1,423	1,376					
2	가조면 수월리	산19-1	도	889	830		거창군			
				889	889					
3	가조면 수월리	산19-2	임	829	171		거창군			
				829	171					
4	가조면 수월리	산19-4	임	747	747		거창군			
				747	747					
5	가조면 수월리	산199-1	차	706	685		거창군			
				706	685					
6	가조면 수월리	산11-1	도	2,106	837		거창군			
				2,106	837					
7	가조면 수월리	산11-2	임	326	105	가조면 사병리 334	김종훈 거창군			
				326	105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6.

거 창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대표자 정대은)
- 교섭요구 일자 : 2018. 12. 26.(수)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19. 1. 2. 18:00한)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 12. 27. ~ 2019. 1. 2.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일부개정이유
(재)거창군장학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공공단체로서,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어 조례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거창군의회의장’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거창군장학회 당연직 이사에서 ‘거창군의회의장’ 삭제 : 안 제4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24. ~ 2019. 1. 14. /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 전 화 : 055-940-8812
- 팩 스 : 055-940-870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교육진흥담당 / ☎ 940-8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평생교육센터소장

1. 제안 이유

(재)거창군장학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공공단체로서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어 조례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거창군의회의장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연직 이사에서 ‘거창군의회의장’ 삭제(안 제4조)

거창군수, 거창군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 거창군수,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 이상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거창군수, 거창군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창군수,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 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u>거창군수, 거창군 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u></p> <p>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 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u>거창군수,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 사로 한다.</u></p> <p>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 4. 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